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3858호, '23. 11. 16. 개정)되어 시·도지사가 감차계획을 수립·확정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게 됨에 따라, 해당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택시 자율 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에서 시·도지사가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보고'하도록 한 것을 '통보'하도록 변경하고자 함.(안 제3조제5항)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행령”을 “시행령 제9조 및”으로 한다.

제3조제5항 중 “보고”를 “통보”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택시운 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 조에 따라 택시 자율감차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u>시행령 제9조</u> 및 ----- ----- -----.
제3조(감차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 ④ (생 략) ⑤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3 항에 따라 사업구역별 감차계획 을 확정할 경우 이를 시·도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국 토교통부장관에게 <u>보고</u> 하여야 한다.	제3조(감차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 <u>통보</u> ----- -----.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